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 .22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27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7. 28 제6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2. 재 안 이 유

-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 업무조정을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위임업무 조정 ⇒ 본청이관

- 지방세 100,000원 미만 결손처분(삭제)
- 균유재산임대료 조정 부과정수(삭제)

4. 검 토 결 과

■ 종합검토결과

- 2차 구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읍면 재무분야 일부직원이 재무과로 흡수(작은면 1명, 큰면 2명만 배치)되게 됨에 따라

읍면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
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